

보도자료

2010년 12월 28일(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과장(2530) 나.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(2350)
다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과장(2770)
[보고안건]
가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과장(2770)

2010년 제78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2010~2011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」(고시) 개정안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2010~2011년 유무선전화망과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결정하고, 동 내용을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」(고시) 개정안에 반영하여 심의·의결함

나. 『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』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방송법시행령 개정('10.10.1)에 따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변경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를 도입하는 『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』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-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

-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 등

※ 평일 : 7시~9시, 17시~20시, 주말 및 공휴일 : 7시30분~11시, 14시~20시

다. 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 등 고시 제·개정 등에 관한 건 (첨부 참조)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상에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부과기준의 신설(10.10.1)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 제정안 및
- 현행 고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일부개정안,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 폐지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[보고안건]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

-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을 보고함

고시 제·개정 주요내용

가. 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」 고시 제정안

① 기본과징금의 산정

-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(0.5%~0.9%)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

※ 매출과 관련없는 위반 행위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상위 법령(정보통신망법 시행령)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

-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△일반 위반행위, △중대한 위반행위, △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가지로 구분

◆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방식

- 1단계(원인 고려) : 일반 위반행위 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
- 2단계(결과 고려) : 피해가 경미하면 '매우 중대한 위반행위'를 '일반 위반행위' 또는 '중대한 위반행위'로 감경 ⇒ 이득획득 여부, 피해규모, 외부노출 여부 고려

② 과징금의 의무적 조정

-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라 50%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가중·감경함

◆ 의무적 조정 방식

- 1단계(의무적 가중) : 위반기간에 따라 단기·중기·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

위반 기간	1년 이내(단기)	1~2년(중기)	2년 초과(장기)
가중 기준	가중 없음	25% 가산	50% 가산

- 2단계(의무적 감경) : 위반횟수에 따라 최초 위반 행위자는 50% 감경

③ 과징금의 임의적 조정

- 50% 범위에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·감경할 수 있는 재량 부여

가중 사유	·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, 이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경우(30% 이내) · 다수 사업자가 관련된 위반 행위를 주도·선도한 경우(20% 이내)
감경 사유	· 방통위가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(50% 이내) ·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(30% 이내)

④ 시정조치 명령

-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되,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

나.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고시 개정안

① 내부관리계획 정의 신설

- 사업자가 수립·시행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대하여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 신설 및 관련 조문 수정
 - ※ 현행 고시는 내부관리계획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내부관리계획의 시행 사항(조직 구성·운영,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)에 대한 개념이 혼재

② 개인정보 출력·복사물의 세부적인 보호조치 규정 삭제

- 개인정보의 출력·복사물 보호조치 의무는 유지하되,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
 - ※ 현행 고시는 개인정보 출력·복사물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일련번호, 목적, 담당자, 파기일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

다.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 고시 폐지안

- 법률·시행령 개정,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 고시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모든 내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고시 폐지
 - ※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은 2000.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초기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권고 규정으로 제정